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901

발의연월일: 2021. 5. 4.

발 의 자:서영교·김민철·김영호

박상혁 • 양정숙 • 오영환

유정주 • 이형석 • 임오경

임호선 · 한병도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공공기관은 민간과의 계약분쟁 시 이의신청 및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 재심청구가 가능하나, 지방공기업은 국제입찰계약에 한해 이의신청 및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재심청구가 가능한 상황임.

하지만, 국제입찰계약 이외의 계약에 대해서도 계약분쟁 조정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계약상대방인 공사·공단의 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계약분쟁 조정절차를 신설하여 민간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제64조의6 신설, 제76조의제2항).

법률 제 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6(이의신청) ①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 공사의 사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 1.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공사 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 2.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 3. 입찰 공고와 관련된 사항
- 4.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 10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 ③ 이의신청 조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조정할 수 있다.

제76조제2항의 본문 중 "제65조"를 "제64조의6, 제65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76조(설립·운영) ① (생 략)

② 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 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 부터 제63조의8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4, 제64조의5, <u>제65조</u>, 제65조의2,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③ 이의신청 조치결과에 대하
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
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
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재심청
구를 심사·조정할 수 있다.
제76조(설립·운영) ① (현행과 같
승)
②
<u>제64</u> 조의6, 제65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 채"로 본다.

•